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대장(제6조4항)

■ 개요

체험구분	☐ 소방안전 ☐ 심폐소생술	일 시	20 . . : 인 원	명
체험대상		교관 1	교관 2	

■ 참가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혈액형	개인정보 수집 동의여부	확인
1						Y	홍길동
2						N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 안전수칙

1. 소방안전체험활동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2. 체험현장 위험요소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훈련교관요원의 지시 및 규칙에 성실히 따르며 개별행동하지 않는다.
5. 안전체험활동 운영자는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7. 참가자가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요청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체험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참가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참가자 의사에 반하여 체험활동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체험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최대한 안전이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10. 체험활동 중 참가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119구조본부장